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54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3.

다.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IV. 검토의견

1.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 확대(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에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u> 우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9조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임산물¹⁾을 재해예방 및 복구, 재해를 입은 자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의 공급, 용재의 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 등을 농·어업인 등의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최근 4년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연료 등 자가소비용으로 나타남, 국유임산물의 대부분은 저부가가치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폐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 2)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 최근 4년간 국유임산물(목재) 무상양여 현황 】

(단위 : m³)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합 계	483	244	213	546	
재해예방 복구용	-	-	-	1	·백두대간수목원 복구 지원
재해국민 지원용	-	-	-	-	
연료 등 자가소비용	483	244	213	545	·떨감나누어주기, ·지역주민 소득지원용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자료 : 산림청

한편, 현행법 제27조³⁾에서는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4년간 국유림 목재 생산량 및 매각수익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목재생산량(471,728m³)은 4년 전 대비 감소하였고, 매각수익(177억원)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최근 4년간 국유림 목재 생산량 및 매각수익 현황 】

(단위 : m³, 천원)

연도	국유림 목재 생산 재적	매각 수익
2020	523,900	17,647,875
2021	445,996	22,536,849
2022	396,251	20,208,536
2023	471,728	17,700,516
합계	1,837,875	78,093,776

자료 : 산림청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국내 목재시장 현황을 보면, 목재자급률은 연평균 16.8% 수준에 불과하고 목재시장의 83.2%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인바, 이는 지속적인 목재수요량의 감소 및 목재이용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 최근 4년간 국산목재 자급률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재 수급량 (천m³)	계	29,765	27,301	27,030	28,054
	국내재	4,577	4,605	4,447	4,502
	수입재	25,188	22,696	22,583	23,552
목재자급률(%)		18.1	16.8	16.4	16.0

자료 : 산림청

목재는 산림부문 탄소저장량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건물부문 등4)에 고부가가치 용도로 그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저탄소사회

4)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의 단위면적당 탄소중립 기여량은 0.4톤(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 0.13tCO₂/m², 탄소배출 대체량: 0.27tCO₂/m)으로 약 30평(연면적 100m²) 목조건축 조성 시 약 40톤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음.

구축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개정안은 목조건축 기술개발과 같은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연구비용 절감과 나아가 국유임산물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그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7조제1항과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무상양여를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법 제27조제1항은 산림청장에게 국유임산물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와 제3호에 따른 “국내 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목재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과 충돌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용 범위가 서로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 중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한바, 법집행 시 자의적 해석에 따라 무분별한 무상양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무상양여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